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4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의자 : 신영대 · 권칠승 · 이학영
박희승 · 정태호 · 안도걸
박지원 · 윤준병 · 한민수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실익 지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간 해당 세제지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아울러, 법인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은 농협 조합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조 5,240억 원 규모의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음.

이에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

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u>2025년 1</u>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p><u>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p> <p>1. ~ 6. (생략) ② (생략)</p>	<p><u>2월 31일-----</u> -----.</p> <p>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